의안변	호	제 28	54호
의	결	2024.	
연 월	일	(제	회)

결 사 항	의 결 사 항	
-------------	---------	--

#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11. 14.

#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854호

제출연월일: 2024. 11. 14. 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#### 1. 개정이유

2019. 12. 30. 조직개편 이후 3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부군 수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일부를 소관 국장, 소장으로 분산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○ 위원장: 부군수→ 업무 소관 국장·소장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제13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성별영향평가(복지지원과)

-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5643(2024. 9. 6.)]

#### 라.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4-1426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9. 10. ~ 2024. 9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・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# 4. 본문: 붙임과 같음

#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#### 제1조(「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3항제1호 중 "부군수"를 "업무 소관 국장"으로, "국장·담당관·과장"을 "부서장"으로 한다.

제2조(「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 본문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#### 제3조(「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#### 제4조(「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1조제2항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국장"을 "부서장"으로 한다.

#### 제5조(「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제3호 중 "부군수"를 "업무 소관 국장"으로 한다.

#### 제6조(「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#### 제7조(「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중 "부군수로 하고"를 "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"로 한다.

제8조(「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제9조(「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

# 제10조(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군수로 하며"를 "업무 소관 국장이

되고,"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

#### 제11조(「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2항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 제12조(「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제13조(「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제14조(「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제15조(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제16조(「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"부군수가 되고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제17조(「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3항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 제18조(「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중 "고성군 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#### 제19조(「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2항 중 "부군수가"를 "업무 소관 국장이"로 한다.

제20조(「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3항 중 "부군수로 하고"를 "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"기획예산담당관, 농업기술센터소장"을 "기획예 산담당관"으로 한다.

# 제21조(「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"부군수가"를 "농업기술센터소장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3 항 중 "농업기술센터소장, 공공급식업무"를 "공공급식업무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# 제1조(「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협의회 설치) ①・② (생	제8조(협의회 설치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	③
사람으로 한다.	
1. 당연직 위원 : <u>부군수</u> , 외국인	1 <u>업무 소관 국장</u> -
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	
<u>국장·담당관·과장</u> , 교육지	<u> 부서장</u>
원청·경찰서 임직원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## 제2조(「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전문위원회) ①・② (생	제4조(전문위원회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</u>	③ <u>업무</u>
<u>수가</u> 되고, 위원은 대표협의체	소관 국장이
의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	
당연직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	
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개별	

# 제3조(「고성군 성별영향평가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	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위원	②
장"이라 한다)은 <u>부군수가</u> 된다.	업무 소관 국장
	<u>o</u> ]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## 제4조(「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	제2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	② 업무 소관 국장이 -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	
다.	
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업무	③
담당 <u>국장</u> 이 되고, 위촉직 위원	<u>부서장</u>
은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21조에	

따라 고성군의회 의원, 노인복 지 관련시설 종사자, 노인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 ④・⑤ (생 략)

·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# 제5조(「고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	②
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의 구	
성비율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	
는 위촉한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관계 공무원(다만, <u>부군수</u> 및	3 업무 소관
보육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	<u> 국장</u>
직 위원으로 한다): 전체 위원	
의 100분의 15 이하	
4. • 5. (생 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
# 제6조(「고성군 온종일 돌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협의체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12조(협의체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위	② 업무 소관 국장이 -

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-----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1. ~ 4. (생 략) ③ • ④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#### 제7조(「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9조(위원회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로</u>	② 업무 소관
<u>하고</u> 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	<u>국장이 되고,</u>
호선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## 제8조(「고성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	제9조(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
성) ① (생 략)	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	②
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	
성하되,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	업무 소관 국
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	장이
선한다.	<b>.</b>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# 제9조(「고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 (생 략)	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	② 업무 소관
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	국장이
호선한다.	<b>.</b>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	③
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고	
성군수(이하"군수"라 한다)가	
임명 또는 위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4. 보건소장</u>	4. 보건업무 담당 부서장
5. ~ 9. (생 략)	5. ~ 9. (현행과 같음)

# 제10조(「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· ② (생 략)	제4조(위원회 설치 및 운영) ①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<u>부군수로 하며</u>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③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, 
1. 행정복지국장, 청소년업무 담 <u>당 과장</u>	1.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# 제11조(「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6조(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<u>업무 소관 국장이</u> 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# 제12조(「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	제5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·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	③ <u>업무 소관 국장이</u> - 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
# 제13조(「고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17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	② 업무 소관
되고,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,	<u>국장이</u>

해양수산과장, 농촌정책과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~ 3. (생략)

③ • ④ (생 략)

 	 	 :	 	 	 	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#### 제14조(「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) ① (생 략)	제4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	② <u>업무 소관 국장이</u> -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#### 제15조(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	제1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 부	② 업무 소관 국장이 -
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	
서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#### 제16조(「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 등) ① (생 략)	제4조(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위원장은 <u>부군수가 되고</u> , 부	② <u>업무 소관 국장이</u>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	
호선한다.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# 제17조(「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・관리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・	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	③ 업무 소관
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관리과장	<u>국장이</u>
이 된다.	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#### 제18조(「고성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・② (생 략)	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	③
장은 <u>고성군 부군수가</u> 되고 위	<u>업무 소관 국장이</u>
촉직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	
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	

---. ④·⑤ (생 략)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## 제19조(「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된다.	② 업무 소관 국장이 -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## 제20조(「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	제11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
• ② (생 략)	•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<u>부군수로 하고</u> 부	③ <u>농업기술센터소장이</u>
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<u>되고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당연직 위원은 <u>기획예산담당</u>	⑤ <u>기획예산담당</u>
관, 농업기술센터소장, 행정과	<u> 관</u>
장, 녹지공원과장, 농촌정책과	
장으로 한다.<2021.07.05. 조 26	
654><타법개정 2022.11.4. 조 2760>	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
# 제21조(「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위원장은 <u>부군수가</u> 되고, 부	② <u>농업기술센터소장이</u>
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	
호선한다.	
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	③
원은 <u>농업기술센터소장, 공공급</u>	<u>공공급식업무</u>
<u>식업무</u> 부서장, 교육청소년과	
장,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	
(이하 "교육지원청"이라 한다)	
급식업무 부서장, 국립농산물품	
질관리원 고성사무소장이 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## 불임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재정수반요인

○ 해당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 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# 3. 미첨부 사유

○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

#### 참고

#### 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#### 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 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 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